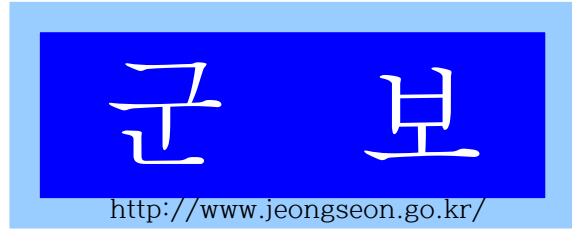
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612호 2022. 12. 07. (수)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22-141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.....1
- 정선군 고시 제2022-145호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3-26호선) 실시계획인가 고시21
- 정선군 고시 제2022-146호 정선 군계획시설(운동장 : 골프연습장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.....23
- 정선군 고시 제2022-147호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.....25
- 정선군 고시 제2022-148호 정선(임계)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.....27
- 정선군 고시 제2022-150호 정선군 천포리(천포마을)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.....29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22-1340호 가리왕산 케이블카 CCTV 구매·설치를 위한 행정예고.....33
- 정선군 공고 제2022-1341호 정선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.....36
- 정선군 공고 제2022-1344호 제285회 정선군의회(정례회) 부의 안건 공고.....45
- 정선군 공고 제2022-1373호 제285회 정선군의회(정례회) 부의 안건 공고.....46
- 정선군 공고 제2022-1397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.....47
- 정선군 공고 제2022-1399호 2025 정선 군관리계획(재정비)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.....49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관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22-141호

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- 1. 신동읍 예미1지구 · 임계면 송계지구 · 남면 문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확정된 지적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자 「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 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- 2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2년 11월 18일

정 선 군 수

가. 결정(변경)취지 :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이 확정된 지적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
나.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, 임계면 송계리, 남면 문곡리 일원

다.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① 신동 도시지역

1)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가) 교통시설

(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1	3	6~10	집산 도로	894	중로3-4 예미리 779-2도	중로1-1 예미리 658-2도	일반 도로	예미농협	강고5호 (77.1.31)	
변경	소로	1	3	6~10	집산 도로	894	중로3-4 예미리 779-2도	중로1-1 예미리 658-2도	일반 도로	예미농협	강고5호 (77.1.31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2	8	국지 도로	211	중로 3-4 예미리 695-22도	소로 1-3 예미리 692-3대	일반 도로		강고2652호 (74.4.9)	
변경	소로	2	2	8	국지 도로	211	중로 3-4 예미리 695-9도	소로 1-3 예미리 692-3도	일반 도로		강고2652호 (74.4.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3	8	국지 도로	77	소로 1-3 예미리 714-3대	소로 3-2 예미리 714-3대	일반 도로		정선고27호 (02.5.16)	
변경	소로	2	3	8	국지 도로	77	소로 1-3 예미리 714-22대	소로 3-2 예미리 714-22대	일반 도로		정선고27호 (02.5.16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3	2	6	국지 도로	173	중로 3-4 예미리 695-9도	중로 3-4 예미리 695-9도	일반 도로	농협참고	정선고27호 (02.5.16)	
변경	소로	3	2	6	국지 도로	173	중로 3-4	중로 3-4	일반 도로	농협참고	정선고27호 (02.5.16)	선형 변경

(2)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1-3	소로1-3	◦ 선형 변경 -B=6~10m, L=894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2	소로2-2	◦ 선형 변경 -B=8m, L=211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3	소로2-3	◦ 선형 변경 -B=8m, L=77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3-2	소로3-2	◦ 선형 변경 -B=6m, L=173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
나) 공간시설

(1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4	신동1공원	소공원	신동읍 예미리 692-25대 일원	890	감)141.9	748.1	정선고 제96호(10.7.9.)	

(2)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4	신동1공원	◦ 면적 변경 -A=890m ² →748.1m ² , 감) 141.9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
② 임계 도시지역

1)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가) 교통시설

(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1	15	보조 간선도로	1,747	중로 1-1 송계리 786-3도	중로 1-1 송계리 253-10	일반 도로	임계면 사무소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중로	2	1	15	보조 간선도로	1,747	중로 1-1 송계리 786-3도	중로 1-1 송계리 280-16도	일반 도로	임계면 사무소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중로	2	2	15~ 20	보조 간선도로	1,196	북측구역계 송계리 105-1도	남측구역계 봉산리 243-2도	일반 도로	임계버스 터미널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중로	2	2	15~ 20	보조 간선도로	1,196	북측구역계 송계리 657-36전	남측구역계 봉산리 243-2도	일반 도로	임계버스 터미널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중로	2	3	15	보조 간선도로	382	소로 3-1 송계리 740-7도	중로 2-5 송계리 688-2도	일반 도로	임계 중앙교회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중로	2	3	15	보조 간선도로	382	소로 3-1 송계리 740-7도	중로 2-5 송계리 688-2도	일반 도로	임계 중앙교회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중로	2	4	15	보조 간선도로	283	중로 2-2 송계리 727-4대	중로 2-5 송계리 711-3답	일반 도로	임계빌라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중로	2	4	15	보조 간선도로	283	중로 2-2 송계리 727-4도	중로 2-5 송계리 711-3도	일반 도로	임계빌라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중로	2	5	15	보조 간선도로	412	소로 2-13 송계리 669-1도	중로 1-1 송계리 949-2도	일반 도로	농민 문화센터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중로	2	5	15	보조 간선도로	412	소로 2-13 송계리 671-1도	중로 2-1 송계리 949-2도	일반 도로	농민 문화센터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1	1	10	국지 도로	140	중로 2-1 송계리 769-4대	중로 2-4 송계리 721-3대	일반 도로	임계 파출소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소로	1	1	10	국지 도로	140	중로 2-1 송계리 763-4대	중로 2-4 송계리 701-2도	일반 도로	임계 파출소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1	4~8	국지 도로	238	중로 1-1 송계리 750-7도	중로 2-3 송계리 579-66도	일반 도로	골말천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소로	2	1	4~8	국지 도로	238	중로 2-1 송계리 750-7도	중로 2-3 송계리 579-66도	일반 도로	골말천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2	8	국지 도로	59	중로 2-2 송계리 738-7대	소로 2-1 송계리 749-2도	일반 도로	임계 감리교회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소로	2	2	8	국지 도로	59	중로 2-2 송계리 738-7대	소로 2-1 송계리 737-5도	일반 도로	임계 감리교회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3	8	국지 도로	90	송계리 740-7도	소로 2-1 송계리 749-2도	일반 도로	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소로	2	3	8	국지 도로	92	송계리 740-7도	소로 2-1 송계리 740-5천	일반 도로	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7	8	국지 도로	176	중로 2-2 송계리 765-7도	소로 2-8 송계리 773-1대	일반 도로	임계축협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소로	2	7	8	국지 도로	176	중로 2-2 송계리 765-7도	소로 2-8 송계리 280-25구	일반 도로	임계축협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8	8	국지 도로	159	중로 2-1 송계리 794대	중로 2-4 송계리 696답	일반 도로	임계면 사무소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소로	2	8	8	국지 도로	159	중로 2-1 송계리 793-3도	중로 2-4 송계리 711-3도	일반 도로	임계면 사무소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9	8	국지 도로	133	중로 2-3 송계리 732-7대	중로 2-4 송계리 722-1도	일반 도로	구시장터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소로	2	9	8	국지 도로	133	중로 2-3 송계리 732-9도	중로 2-4 송계리 724-1도	일반 도로	구시장터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10	8	국지 도로	133	중로 2-3 송계리 696답	중로 2-4 송계리 703답	일반 도로	청송장 여관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소로	2	10	8	국지 도로	133	중로 2-3 송계리 696-2도	중로 2-4 송계리 703-3답	일반 도로	청송장 여관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11	8	국지 도로	104	중로 2-3 송계리 732-9도	소로 2-13 송계리 733-26도	일반 도로	임계 어린이집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소로	2	11	8	국지 도로	104	중로 2-3 송계리 732-9도	소로 2-13 송계리 733-26도	일반 도로	임계 어린이집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12	8	국지 도로	101	중로 2-3 송계리 691-1답	소로 2-13 송계리 671답	일반 도로	3호 어린이공원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소로	2	12	8	국지 도로	101	중로 2-3 송계리 691-7도	소로 2-13 송계리 671-2답	일반 도로	3호 어린이공원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13	8	국지 도로	244	중로 2-2 송계리 733-1천	중로 2-5 송계리 671-1도	일반 도로	임계교회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소로	2	13	8	국지 도로	244	중로 2-2 송계리 660-1도	중로 2-5 송계리 671-1도	일반 도로	임계교회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17	8	국지 도로	37	중로 2-2 송계리 644-4도	소로 3-15 송계리 634-1도	일반 도로	임계토건	강고112호 (87.9.9)	
변경	소로	2	17	8	국지 도로	37	중로 2-2 송계리 644-4도	소로 3-15 송계리 634-1도	일반 도로	임계토건	강고112호 (87.9.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19	8	국지 도로	79	중로 2-2 송계리 738-5대	소로 2-1 송계리 749-38대	일반 도로	-	정고96호 (10.7.09)	
변경	소로	2	19	8	국지 도로	79	중로 2-2 송계리 738-5대	소로 2-1 송계리 749-38대	일반 도로	-	정고96호 (10.7.0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3	10	6	국지 도로	132	중로 2-3 송계리 693천	중로 2-4 송계리 702천	일반 도로	청송장 여관	정고44호 (03.5.9)	
변경	소로	3	10	6	국지 도로	132	중로 2-3 송계리 693-3도	중로 2-4 송계리 691-10도	일반 도로	청송장 여관	정고44호 (03.5.9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3	14	6	국지 도로	279	중로 1-1 송계리 253-16도	임계배수지 송계리 산92-1임	일반 도로	-	정고96호 (10.7.09)	
변경	소로	3	14	6	국지 도로	279	중로 2-1 송계리 253-10도	임계배수지 송계리 산92-1임	일반 도로	-	정고96호 (10.7.09)	선형 변경

(2)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2-1	중로2-1	◦ 선형 변경 -B=15m, L=1,747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중로2-2	중로2-2	◦ 선형 변경 -B=15~20m, L=1,196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중로2-3	중로2-3	◦ 선형 변경 -B=15m, L=382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중로2-4	중로2-4	◦ 선형 변경 -B=15m, L=283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중로2-5	중로2-5	◦ 선형 변경 -B=15m, L=412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1-1	소로1-1	◦ 선형 변경 -B=10m, L=140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1	소로2-1	◦ 선형 변경 -B=4~8m, L=238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2	소로2-2	◦ 선형 변경 -B=8m, L=59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3	소로2-3	◦ 선형 및 연장 변경 -B=8m, L=90m→92m, 증)2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및 연장 변경
소로2-7	소로2-7	◦ 선형 변경 -B=8m, L=176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8	소로2-8	◦ 선형 변경 -B=8m, L=159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9	소로2-9	◦ 선형 변경 -B=8m, L=133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10	소로2-10	◦ 선형 변경 -B=8m, L=133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11	소로2-11	◦ 선형 변경 -B=8m, L=104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12	소로2-12	◦ 선형 변경 -B=8m, L=101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13	소로2-13	◦ 선형 변경 -B=8m, L=244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17	소로2-17	◦ 선형 변경 -B=8m, L=37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19	소로2-19	◦ 선형 변경 -B=8m, L=79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3-10	소로3-10	◦ 선형 변경 -B=6m, L=132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3-14	소로3-14	◦ 선형 변경 -B=6m, L=279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
(3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노외주차장	임계면 송계리 781-3번지 일원	885	-	885	정고 제69호 (09.5.8)	선형 변경

(4)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노외주차장	◦ 선형 변경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
나) 공간시설

(1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3	임계제3공원	어린이공원	임계면 송계리 692번지 일원	2,441	감) 195	2,246	강고 제112호(87.9.9.)	

(2)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3	임계제3공원	◦ 면적 변경 -A=2,441m ² →2,246m ² , 감) 195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
③ 비도시지역 - 문곡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가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적(m ²)			구성비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274,589	증)6,214.9	280,803.9	100.0	지적재조사에 따른 용도지역 편입면적 변경(구역 변경 없음)
계획관리지역	274,589	증)6,214.9	280,803.9	100.0	

2) 용도지구 결정(변경)

가)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 표시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법적 제한 내용	면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문곡 취락지구	주거개발 진흥지구	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103-1번지 일원	-	274,589	증) 6,214.9	280,803. 9	2001. 11. 17. (정선군고시 2001-83호)	

나)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지 구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문곡취락지구	- 면적 변경 : 274,589m ² →280,803.9m ² , 증)6,214.9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용도지구 편입면적 변경(구역 변경 없음)

3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

가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 표시번호	지구명	구역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0	문곡 취락지구	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	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103-1번지 일원	274,589	증) 6,214.9	280,803.9	2001. 11. 17. (정선군고시 2001-83호)	

나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지 구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0	문곡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- 면적 변경 : 274,589㎡→280,803.9㎡, 증)6,214.9㎡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면적 변경(구역 변경 없음)

4)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

가) 철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	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점	중점	주요경과지				
기정	1	철도	일반철도	문곡리 590-10철	문곡리 산173-2철	벌어곡역	828	7,397	강고 제51호 (11.1.28)	소로 3-13호선 (A=116㎡)
변경	1	철도	일반철도	문곡리 590-10철	문곡리 산173-2철	벌어곡역	828	7,387	강고 제51호 (11.1.28)	중복결정

나) 철도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철도	◦ 철도 선형 및 면적변경 -A=7,397㎡→7,387㎡, 감) 10㎡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철도 선형 및 면적 변경

5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

가) 교통시설

(1) 도로 총괄표

구 분		합 계			1류			2류			3류		
	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
합계	기정	21	4,230	37,138.2	3	1,826	18,260.0	6	940	7,605.7	12	1,464	11,272.5
	변경	21	4,221	39,155.6	3	1,816	19,466.7	6	941	8,037.8	12	1,464	11,651.1
중로	기정	1	367	4,524.0	-	-	-	-	-	-	1	367	4,524.0
	변경	1	371	4,618.9	-	-	-	-	-	-	1	371	4,618.9
소로	기정	20	3,863	32,614.2	3	1,826	18,260.0	6	940	7,605.7	11	1,097	6,748.5
	변경	20	3,850	34,536.7	3	1,816	19,466.7	6	941	8,037.8	11	1,093	7,032.2

(2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3	1	10~15	간선도로	367	311-3도	소로2-17 135-5도	일반도로	-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중로	3	1	10~15	간선도로	371	311-3도	소로2-17 135-5도	일반도로	-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, 4,618.9 ㎡중의 97㎡
기정	소로	1	1	10	간선도로	634	중로3-1 42-1도	북측구역계	일반도로	-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1	1	10	간선도로	634	중로3-1 133-1도	북측구역계	일반도로	-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1	2	10	집산도로	610	중로3-1 319-6도	소로1-3 590-10철	일반도로	-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1	2	10	집산도로	600	중로3-1 320-1도	소로1-3 64제	일반도로	-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1	3	10	집산도로	582	소로2-12 319-6도	북측구역계 590-10철	일반도로	-	정선고제156호 (18.9.14)	
변경	소로	1	3	10	집산도로	582	소로2-12 115-1제	북측구역계 590-39천	일반도로	-	정선고제156호 (18.9.14)	선형 변경, 6,121.4 ㎡중의 1,746㎡
기정	소로	2	4	8	집산도로	156	소로1-2 127-9도	소로1-3 590-26제	일반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2	4	8	집산도로	156	소로1-2	소로1-3	일반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6	8	국지도로	165	소로3-7 327-9도	소로2-4 327-9도	일반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2	6	8	국지도로	166	소로3-7 327-9도	소로2-4 80-20구	일반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12	8	국지도로	405	중로3-1 322-15천	소로1-3 115-1제	일반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2	12	8	국지도로	405	중로3-1 322-15천	소로1-3 115-1제	일반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14	8	국지도로	78	80-22구	소로1-3 590-25천	일반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2	14	8	국지도로	76	80-22구	소로1-3 590-25천	일반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16	8	국지도로	38	소로2-6 327-9도	소로2-12 115납	일반도로	-	강고제51호 (11.1.28)	
변경	소로	2	16	8	국지도로	38	소로2-6 327-9도	소로2-12 115-1제	일반도로	-	강고제51호 (11.1.28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17	8	간선도로	98	중로3-1 42-1도	46-1임	일반도로		정선고제196호 (17.12.05)	
변경	소로	2	17	8	간선도로	100	중로3-1 135-3도	46-1임	일반도로		정선고제196호 (17.12.05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3	1	3.5	국지도로	9	소로1-1	102-1학	일반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3	1	3.5	국지도로	9	소로1-1	102-1학	일반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3	2	6	국지도로	83	소로1-2 67-2철	소로1-3 595도	일반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3	2	6	국지도로	83	소로1-2 67-2철	소로1-3 115-1도	일반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3	4	6	국지도로	160	중로3-1 590천	산173-4임	일반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3	4	6	국지도로	163	중로3-1 590천	산173-4임	일반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3	5	6	집산 도로	220	중로3-1 324-2도	591구	일반 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3	5	6	집산 도로	219	중로3-1 324-2도	591구	일반 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3	6	6	국지 도로	195	중로3-1 322-2도	소로2-4 127-4전	일반 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3	6	6	국지 도로	189	중로3-1 322-2도	소로2-4 127-4전	일반 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3	7	6	국지 도로	141	소로3-6 121-4도	소로2-12 80-4구	일반 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3	7	6	국지 도로	141	소로3-6 121-4도	소로2-12 116-2제	일반 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3	8	6	국지 도로	76	소로1-2 127-9도	소로3-6 123-2전	일반 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3	8	6	국지 도로	76	소로1-2 122-16대	소로3-6 121-3답	일반 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3	9	6	국지 도로	102	소로3-7 327-9도	소로2-12 329-26답	일반 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3	9	6	국지 도로	102	소로3-7 327-9도	소로2-12 116-2제	일반 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3	10	6	국지 도로	35	100-1학	100-1학	일반 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3	10	6	국지 도로	35	100-1학	100-1학	일반 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3	11	4	국지 도로	26	소로3-5 317-29전	317-22전	일반 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
변경	소로	3	11	4	국지 도로	26	소로3-5 317-4도	317-22전	일반 도로		정선고제83호 (01.11.17)	선형 변경
기정	소로	3	13	4	특수 도로	50	소로1-2 127철	127-14철	보행자 전용도로	-	정선고제196호 (17.12.05)	
변경	소로	3	13	4	특수 도로	50	소로1-2 127-9도	127-14철	보행자전 용도로	-	정선고제196호 (17.12.05)	선형변경 철도 및 완충녹지 와 중복결정

(3)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3-1	중로3-1	◦ 선형 및 연장 변경 -B=10~15m, L=367m→371m, 증) 4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및 연장 변경
소로1-1	소로1-1	◦ 선형 변경 -B=10m, L=634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1-2	소로1-2	◦ 선형 및 연장 변경 -B=10m, L=610m→600m, 감) 10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및 연장 변경
소로1-3	소로1-3	◦ 선형 변경 -B=10m, L=582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4	소로2-4	◦ 선형 변경 -B=8m, L=156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6	소로2-6	◦ 선형 및 연장 변경 -B=8m, L=165m→166m, 증) 1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및 연장 변경
소로2-12	소로2-12	◦ 선형 변경 -B=8m, L=405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14	소로2-14	◦ 선형 및 연장 변경 -B=8m, L=78→76m, 감) 2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및 연장 변경
소로2-16	소로2-16	◦ 선형 변경 -B=8m, L=38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2-17	소로2-17	◦ 선형 및 연장변경 -B=8m, L=98m→100m, 증)2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및 연장 변경
소로3-1	소로3-1	◦ 선형 변경 - B=3.5m, L=9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3-2	소로3-2	◦ 선형 변경 -B=6m, L=83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3-4	소로3-4	◦ 선형 및 연장 변경 -B=6m, L=160→163m, 증) 3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및 연장 변경
소로3-5	소로3-5	◦ 선형 및 연장 변경 -B=6m, L=220→219m, 감) 1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및 연장 변경
소로3-6	소로3-6	◦ 선형 및 연장 변경 -B=6m, L=195→189.m, 감) 6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및 연장 변경
소로3-7	소로3-7	◦ 선형 변경 -B=6m, L=141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3-8	소로3-8	◦ 선형 변경 -B=6m, L=76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3-9	소로3-9	◦ 선형 변경 -B=6m, L=102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3-10	소로3-10	◦ 선형 변경 -B=6m, L=35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3-11	소로3-11	◦ 선형 변경 -B=4m, L=26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소로3-13	소로3-13	◦ 선형 변경 -B=4m, L=50m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 변경

(4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2	노외주차장	문곡리 312-1번지 일원	962	감) 42	920	정고 제83호 (01.11.17)	
변경	3	노외주차장	문곡리 325-15번지 일원	122	증) 14	138	강고 제51호 (11.1.28)	
변경	4	노외주차장	문곡리 321-17번지 일원	1,050	감) 54.9	995.1	강고 제51호 (11.1.28)	
변경	5	노외주차장	문곡리 127-14번지 일원	1,887	감) 11	1,876	정고 제44호 (11.6.1)	

(5)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	노외주차장	◦ 면적 변경 -A=962m ² →920m ² , 감)42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3	노외주차장	◦ 면적 변경 -A=122m ² →138m ² , 증)14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4	노외주차장	◦ 면적 변경 -A=1,050m ² →995.1m ² , 감)54.9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5	노외주차장	◦ 면적 변경 -A=1,887m ² →1,876m ² , 감)11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
나) 공간시설

(1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공원	소공원	남면 문곡리 597번지	1,617	감) 185.8	1,431.2	정선고 제42호(04.9.15.)	
변경	2	공원	소공원	남면 문곡리 66-7번지	444	증) 11.9	455.9	정선고 제42호(04.9.15.)	
변경	4	공원	소공원	남면 문곡리 319-4번지 일원	645	증) 21	666	정선고 제42호(04.9.15.)	

(2)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공원	◦ 면적 변경 -A=1,617m ² →1,431.2m ² , 감) 185.8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2	공원	◦ 면적 변경 -A=444m ² →455.9m ² , 증) 11.9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4	공원	◦ 면적 변경 -A=645m ² →666m ² , 증) 21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
(3)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녹지	완충녹지	문곡 취락지구 내 정선선 철도 좌우변	21,919	증) 31.3	21,950.3	강원고 제51호(11.1.28.)	

(4)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녹지	◦ 면적 변경 -A=21,919m ² →21,950.3m ² , 증) 31.3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
다) 공공문화체육시설

(1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공공청사	남면사무소	남면 문곡리 103-1번지	2,776	증) 384.9	3,160.9	정선군고시 제83호 (01.11.17)	
변경	2	공공청사	보건소	남면 문곡리 329-2번지 일원	1,092	감) 65	1,027	정선군고시 제51호 (11.1.28)	
변경	3	공공청사	남면파출소	남면 문곡리 322-4번지 일원	769	감) 52	717	정선군고시 제196호 (17.12.5)	
변경	4	공공청사	남면119 지역대	남면 문곡리 80-16번지 일원	1,243	감) 67.6	1,175.4	정선군고시 제196호 (17.12.5)	

(2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공공청사	◦ 면적 변경 -A=2,776㎡→3,160.9㎡, 증) 384.9㎡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2	공공청사	◦ 면적 변경 -A=1,092㎡→1,027㎡, 감) 65㎡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3	공공청사	◦ 면적 변경 -A=769㎡→717㎡, 감) 52㎡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4	공공청사	◦ 면적 변경 -A=1,243㎡→1,175.4㎡, 감) 67.6㎡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
(3) 학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남선초등학교	초등학교	남면 문곡리 100-1번지 일원	12,338	증) 59	12,397	정선군고시 제83호 (01.11.17)	
변경	2	학교	중학교	남면 문곡리 313번지 일원	11,641	증) 349	11,990	정선군고시 제51호 (11.1.28)	

(4) 학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남선초등학교	◦ 면적 변경 -A=12,338㎡→12,397㎡, 증) 59㎡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2	학교	◦ 면적 변경 -A=11,641㎡→11,990㎡, 증) 349㎡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
(5) 체육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체육시설	생활 체육시설1	남면 문곡리 116번지 일원	2,898	감)139.8	2,758.2	강원도고시 제51호 (11.1.28)	
변경	2	체육시설	생활 체육시설2	남면 문곡리 327-2번지 일원	2,323	감)38	2,285	강원도고시 제51호 (11.1.28)	

(6) 체육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체육시설	◦ 면적 변경 -A=2,898㎡→2,758.2㎡, 감) 139.8㎡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2	체육시설	◦ 면적 변경 -A=2,323㎡→2,285㎡, 감) 38㎡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
(7) 문화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문화시설	복지생활관	남면 문곡리 325-1번지	540	증)10	550	정선고 제196호(17.12.5)	

(8) 문화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문화시설	◦ 면적 변경 -A=540m ² →550m ² , 증) 10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
라) 방재시설

(1) 하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	연장 (m)	폭원 (m)	면적 (m ²)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				
기정	1	하천	지방하천	문곡리 590천	문곡리 590천	1,048	40~75	60,307	강원도고시 제51호 (11.1.28)	
변경	1	하천	지방하천	문곡리 590천	문곡리 590천	1,048	40~75	57,002	강원도고시 제51호 (11.1.28)	
기정	2	하천	소하천	문곡리 590천	문곡리 138-2전	81	15~30	1,558	정선군고시 제196호 (17.12.5)	
변경	2	하천	소하천	문곡리 590천	문곡리 138-2전	81	15~30	1,463	정선군고시 제196호 (17.12.5)	

(2) 하천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하 천	◦ 면적 변경 -A=60,307m ² →57,002m ² , 감) 3,305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2	소하천	◦ 면적 변경 -A=1,558m ² →1,463m ² , 감) 95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
마) 환경기초시설

(3) 하수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하수도 (공공하수처리시설)	남면 문곡리 68-1번지 일원	1,562	감) 34	1,528	정고 제42호 (04.9.15)	

(4) 하수도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하수도 (공공하수처리시설)	◦ 면적 변경 -A=1,562m ² →1,528m ² , 감) 34m ²	◦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
6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

가)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가구번호	기정면적(m ²)	가 구		증·감 (m ²)	비고
			위치	변경면적(m ²)		
계		274,589	-	280,803.9	증)6,214.9	
A	주 거 용 지	88,460	남면 문곡리 593번지 일원	100,047.3	증)11,587.3	
B	상 업 용 지	5,234	남면 문곡리 134-2번지 일원	5,268.0	증)34.0	
C	녹 지 용 지	92,145	남면 문곡리 138-2번지 일원	89,512.6	감)2,632.4	
D	공공시설용지	88,750	남면 문곡리 103-1번지 일원	85,976.0	감)2,774.0	

나)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번호		구 분	기정면적 (m ²)	획 지		증·감 (m ²)	비고
기정	변경			위 치	변경면적 (m ²)		
합 계			274,589	-	280,803.9	증)6,214.9	
주거용지			88,460	-	100,047.3	증)11,587.3	
아파트용지		-	15,179	-	16,940.5	증)1,761.5	
A1-1	A1-1	아파트용지	7,311	남면 문곡리 593번지 일원	8,095.9	증)784.9	
A1-2	A1-2	"	7,868	남면 문곡리 596번지 일원	8,844.6	증)976.6	
단독주택용지		-	68,358	-	77,588.9	증)9,230.9	
A2-1	A2-1	단독주택용지	12,227	남면 문곡리 81번지 일원	13,702.1	증)1,475.1	
A2-2	A2-2	"	2,118	남면 문곡리 80-17번지 일원	2,298.6	증)180.6	
A2-3	A2-3	"	8,871	남면 문곡리 120-7번지 일원	9,878.2	증)1,007.2	
A2-4	A2-4	"	7,149	남면 문곡리 112-5번지 일원	7,904.5	증)755.5	
A2-5	A2-5	"	6,328	남면 문곡리 329-3번지 일원	6,752.0	증)424.0	
A2-6	A2-6	"	6,068	남면 문곡리 54-3번지 일원	7,237.1	증)1,169.1	
A2-7	A2-7	"	5,963	남면 문곡리 95-11번지 일원	9,256.7	증)3,293.7	
A2-8	-	"	1,395	남면 문곡리 99-5번지 일원	-	감)1,395.0	A2-7합병
A2-9	A2-8	"	192	남면 문곡리 103-3번지 일원	199.0	증)7.0	
A2-10	A2-9	"	3,182	남면 문곡리 102-2번지 일원	3,559.0	증)377.0	
A2-11	A2-10	"	1,674	남면 문곡리 42번지 일원	2,035.7	증)361.7	
A2-12	A2-11	"	4,858	남면 문곡리 317-23번지 일원	5,387.0	증)529.0	
A2-13	A2-12	"	2,583	남면 문곡리 138-1번지 일원	2,688.0	증)105.0	
A2-14	A2-13	"	1,875	남면 문곡리 317-5번지 일원	2,353.0	증)478.0	
A2-15	A2-14	"	3,875	남면 문곡리 142-2번지 일원	4,338.0	증)463.0	

도면번호		구 분	기정면적 (㎡)	확 지		증·감 (㎡)	비고
기정	변경			위 치	변경면적 (㎡)		
근린생활용지		-	4,923	-	5,517.9	증)594.9	
A3-1	A3-1	근린생활용지	3,980	남면 문곡리 321-2번지 일원	4,414.3	증)434.3	
A3-2	A3-2	"	246	남면 문곡리 319-1번지 일원	259.9	증)13.9	
A3-3	A3-3	"	697	남면 문곡리 135-4번지 일원	843.7	증)146.7	
상업용지			5,234	-	5,268.0	증)34.0	
B1-1	B1-1	상업용지	3,325	남면 문곡리 129-11번지 일원	3,153.2	감)171.8	
B1-2	B1-2	"	513	남면 문곡리 104-5번지 일원	657.0	증)144.0	
B1-3	B1-3	"	1,396	남면 문곡리 134-2번지 일원	1,457.8	증)61.8	
녹지용지			92,145	-	89,512.6	감)2,632.4	
C2-1	C2-1	소공원	444	남면 문곡리 66-7번지 일원	455.9	증)11.9	
C2-2	C2-2	소공원	1,617	남면 문곡리 597번지 일원	1,431.2	감)185.8	
C2-3	C2-3	소공원	645	남면 문곡리 319-4번지 일원	666.0	증)21.0	
C3	C3	녹 지	5,655	남면 문곡리 산173-6번지 일원	6,435.0	증)780.0	
C4	C4	하 천	61,865	남면 문곡리 590번지 일원	58,465.0	감)3,400.0	
C5	C5	완충녹지	21,919	철도(정선선) 좌우변	22,059.5	증)140.5	
공공시설용지			88,750	-	85,976.0	감)2,774.0	
D1	D1	도 로	40,150	남면 문곡리 42-1번지 일원	37,112.6	감)3,037.4	
D2-1	D2-1	주차장	962	남면 문곡리 312-1번지 일원	920.0	감)42.0	
D2-2	D2-2	주차장	122	남면 문곡리 325-15번지 일원	138.0	증)16.0	
D2-3	D2-3	주차장	1,050	남면 문곡리 321-17번지 일원	995.1	감)54.9	
D2-4	D2-4	주차장	1,887	남면 문곡리 127-14번지 일원	1,876.0	감)11.0	
D3	D3	하수처리장	1,562	남면 문곡리 68-1번지 일원	1,528.5	감)33.5	
D4-1	D4-1	공공청사	2,776	남면 문곡리 103-1번지 일원	3,160.9	증)384.9	
D4-2	D4-2	공공청사	1,092	남면 문곡리 329-2번지 일원	1,027.0	감)65.0	
D4-3	D4-3	공공청사	769	남면 문곡리 322-4번지 일원	717.0	감)52.0	
D4-4	D4-4	공공청사	1,243	남면 문곡리 80-16번지 일원	1,175.4	감)67.6	
D5-1	D5-1	학 교	12,338	남면 문곡리 100-1번지 일원	12,397.0	증)59.0	
D5-2	D5-2	학 교	11,641	남면 문곡리 313번지 일원	11,989.0	증)348.0	
D6-1	D6-1	체육시설	2,898	남면 문곡리 116번지 일원	2,758.2	감)139.8	
D6-2	D6-2	체육시설	2,323	남면 문곡리 327-2번지 일원	2,285.0	감)38.0	
D7	D7	철 도	7,397	남면 문곡리 127-14번지 일원	7,346.3	감)50.7	
D8	D8	문화시설	540	남면 문곡리 325-1번지 일원	550.0	증)10.0	

7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
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

가) 건축물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			
기정	A1-1 ~ A1-2	남면 문곡리 593번지 일원	허 용 용 도	◦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				
			불 허 용 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			
			건폐율	◦20% 이하				
			용적률	◦200% 이하				
			높 이	◦12층 이하				
			배 치 (권 장)	◦남향 또는 동남향 위주의 배치 ◦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80m 이하로 배치				
			형 태 (권 장)	◦외벽 : 아파트 주동의 전면길이가 길 경우 일부분을 전후로 돌출 또는 후퇴 시키도록 하여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 설치 ◦지붕 :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형태의 지붕 설치				
			색 채 (권 장)	◦단지 북측은 남면의 랜드마크 기능 및 단지 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◦북측 이외의 주변은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				
			건축선	-				
기정	A2-1 ~ A2-10 A2-12 ~ A2-15	남면 문곡리 109-2번지 일 원	허 용 용 도	◦단독주택 ◦제1종근린생활시설 ◦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단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◦종교시설 ◦노유자시설 ◦운동시설(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) ◦창고시설(농업, 임업, 축산업에 한함) ◦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				
			불 허 용 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			
			건폐율	◦60% 이하				
			용적률	◦150% 이하				
			높 이	◦4층 이하				
			변경	A2-1 ~ A2-9 A2-11 ~ A2-14	남면 문곡리 109-2번지 일 원	배 치 (권 장)	◦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◦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	
						형 태 (권 장)	◦경사지붕(경사구배 : 3/10 이상, 5/10 이하)	
						색 채 (권 장)	◦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	
						건축선 (규 제)	◦중로3-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.5m 지정 ◦소로1-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	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기정	A2-11	남면 문곡리 42번지 일원	허 용 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단독주택 ◦제1종근린생활시설 ◦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◦종교시설 ◦노유자시설 ◦운동시설(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) ◦업무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㎡ 미만인 것 ◦창고시설(농업, 임업, 축산업에 한함) ◦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◦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, 석유판매소 	
			불 허 용 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변경	A2-10	남면 문곡리 42번지 일원	건폐율	◦60% 이하	
			용적률	◦150% 이하	
			높 이	◦4층 이하	
			배 치 (권 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◦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	
			형 태 (권 장)	◦경사지붕(경사구배 : 3/10 이상, 5/10 이하)	
			색 채 (권 장)	◦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	
			건축선 (규 제)	-	
기정	A3-1 ~ A3-3	남면 문곡리 321-2번지 일원	허 용 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단독주택 ◦제1종근린생활시설 ◦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◦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 제외) ◦종교시설 ◦교육연구시설 ◦노유자시설 ◦운동시설(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) ◦창고시설(농업, 임업, 축산업에 한한다) ◦업무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㎡ 미만인 것 	
			불 허 용 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	건폐율	◦60% 이하	
			용적률	◦150% 이하	
			높 이	◦4층 이하	
			배 치 (권 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◦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	
			형 태 (권 장)	◦경사지붕(경사구배 : 3/10 이상, 5/10 이하)	
			색 채 (권 장)	◦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	
			건축선 (규 제)	◦중로3-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.5m 지정	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기정	B1-1 ~ B1-3	남면 문곡리 134-2번지 일 원	허 용 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단독주택 ◦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◦ 문화 및 집회시설 ◦ 종교시설 ◦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, 상점(당해용도 2천㎡ 미만인 것) ◦ 의료시설(격리병원을 제외한다) ◦ 교육연구시설 ◦ 운동시설(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) ◦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㎡ 미만인 것 ◦ 숙박시설(3층, 연면적 660㎡ 이하에 한한다) ◦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, 세차장에 한한다) 	
			불 허 용 도	◦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	건폐율	◦ 60% 이하	
			용적률	◦ 200% 이하	
			높 이	◦ 4층 이하	
			배 치 (권 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◦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	
			형 태 (권 장)	◦ 경사지붕(경사구배 : 3/10 이상, 5/10 이하)	
			색 채 (권 장)	◦ 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	
			건축선 (규 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중로3-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.5m 지정 ◦ 소로1-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	
기정	D4-1 D4-3	남면 문곡리 329-2번지 일 원	허 용 용 도	◦ 공공업무시설	
			불 허 용 도	◦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	건폐율	◦ 60% 이하	
			용적률	◦ 150% 이하	
			높 이	◦ 4층 이하	
			배 치 (권 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◦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	
			형 태	-	
			색 채 (권 장)	◦ 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	
			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중로3-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.5m 지정 ◦ 소로1-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	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기정	D4-2 D4-4	남면 문곡리 329-2번지 일 원	허 용 용 도	◦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및 그 부속용도 시설 ◦공공업무시설	
			불 허 용 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	건폐율	◦60% 이하	
			용적률	◦150% 이하	
			높 이	◦4층 이하	
			배 치 (권 장)	◦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일치 ◦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	
			형 태	-	
			색 채 (권 장)	◦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	
건축선	-				
기정	D5-1 D5-2	남면 문곡리 100-1번지 일 원	허 용 용 도	◦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시설	
			불 허 용 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	건폐율	◦60% 이하	
			용적률	◦150% 이하	
			높 이	◦4층 이하	
			배 치	-	
			형 태	-	
			색 채 (권 장)	◦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	
건축선	-				
기정	D6-1 D6-2	남면 문곡리 327-2번지 일 원	허 용 용 도	◦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및 그 부속용도시설	
			불 허 용 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	건폐율	◦40% 이하	
			용적률	◦100% 이하	
			높 이	◦2층 이하	
			배 치	-	
			형 태	-	
			색 채 (권 장)	◦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	
건축선	-				
기정	D8	남면 문곡리 325-1번지 일 원	허 용 용 도	◦노유자시설 (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)	
			불 허 용 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	건폐율	◦60% 이하	
			용적률	◦150% 이하	
			높 이	◦4층 이하	
			배 치	◦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일치 ◦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	
			형 태	-	
			색 채 (권 장)	◦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	
건축선	-				

라.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
: 실음생략

정선군 고시 제2022-145호

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3-26호선) 실시계획인가 고시

정선군 고시 제2021-93호(2021. 7. 9.)로 최초 결정된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 3-26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25일

정 선 군 수

가. 위 치 :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93-9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3-26호선) 공사
- 2) 명 칭 :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3-26호선) 개설공사(여량농협 나전지점 인근)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비 고
	세부시설명	연장·폭원	금회 변경 시행	
도로	소로 3-26호선	L=119m, B=5.0m	L=81.6m, B=5.0m	
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1) 성 명 : 정선군수(북평면장)
- 2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
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2.12.31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

순 번	위 치	지 번	지 목	면 적 (㎡)		소 유 자		이해관계인		
				공부	편입	주소	성명	관계인	성명	소유권이 외의 종류 및 내용
1	북평면 북평리	665-7	도	1,956.7	38		정선군	-	-	-
2	"	690-14	대	112.0	3		정선군	-	-	-
3	"	693-9	전	374.4	356		정선군	-	-	-
계				2,443.1	397					

사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정선군 고시 제2022-146호

정선 군계획시설(운동장 : 골프연습장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강원도 고시 제2008-218호(2008.08.08.)로 최초 결정되고, 정선군 고시 제2022-2호(2022.01.07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(운동장 : 골프연습장)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일

정 선 군 수

- 1. 위 치: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변경없음
 - 가. 종 류: 정선 군계획시설(골프연습장) 사업
 - 나. 명 칭: 정선 군계획시설(골프연습장) 건립사업
-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변경없음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비 고
	세부시설명	면적(m ²)		
종합운동장	운동장	177,698.4	☐ 골프연습장 7,794m ²	

-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 : 변경없음
 - 가. 성 명: 정선군수(문화관광과)
 - 나. 주 소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- 5. 사업기간 : 변경
 - 가. 당 초 : 2022. 5. 6. ~ 2022. 10. 31.
 - 나. 변 경 : 2022. 5. 6. ~ 2023. 6. 30.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변경없음

연 번	위 치	지 번	지 목	면 적 (㎡)		소 유 자		이해관계인		
				공부	편입	주소	성명	관계인	성명	소유권 외의 종류 의 내용
1	정선읍 애산리	768	체	177,698.4	177,698.4		정선군	-	-	-

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정선군 고시 제2022-147호

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강원도 고시 제28호(2007. 2. 23)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 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일

정 선 군 수

- 1. 위 치 :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970-4번지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변경
 - 가. 종 류 :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) 사업
 - 나. 명 칭
 - 기 정 : 공공하수처리시설(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) 증설사업
 - 변 경 : 공공하수처리시설(남평 마을하수도) 증설사업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변경없음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	비 고
	세부시설명	면적(m ²)	기시행	금회시행(증설)	
하수도	남평 공공하수처리시설	3,618m ²	■ Q=150m ³ /일	■ Q=350m ³ /일 (증설 Q=200m ³ /일)	

-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 : 변경없음
 - 가. 성 명 : 정선군수(상하수도사업소)
 - 나. 주 소 :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
- 5. 사업기간 : 변경
 - 가. 기 정 : 2020.02.14. ~ 2022.12.31.
 - 나. 변 경 : 2022.02.14. ~ 2024.12.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붙임(변경없음)

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◎ 토지조서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대장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
		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 및 내용
1	북평면 남평리	970-4	잡	3,559	3,559	봉양3길 21	정선군	-	-	-
계		1필지		3,559	3,559					

정선군 고시 제2022-148호

정선(임계)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정선군 고시 제2010-96호(2010. 7. 9)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(임계)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일

정 선 군 수

1. 위 치 :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179-6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변경없음
 - 가. 종 류 : 정선(임계)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공사(임계 정수장)
 - 나. 명 칭 : 정선(임계)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시설개선 공사(임계 정수장)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변경없음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비 고
	세부시설명	면 적(m ²)	금회시행(증설)	
수도공급설비	임계정수장	A=5,570m ²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침 전 지 : B3.0m×L23.0m×H4.0m×2지 ▪ 완속여과지 : B8.0m×L12.0m×3지 ▪ 정배 수 지 : Ø8.3m×H4.2m(250m³ STS원형) ▪ 가압펌프장 : W2.0m×L2.0m×H2.5m(1,500m³/일) 	

4. 사업시행자 및 주소 : 변경없음
 - 가 성 명 : 정선군수(상하수도사업소)
 - 나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(정선읍 정선로 1047)

5. 사업기간

가. 기 정 : 2020. 12. 11. ~ 2022. 12. 31.

나. 변 경 : 2020. 12. 11. ~ 2023. 6. 30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붙임

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◎ 토지조서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대장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
		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소유권이외권리 의종류 및 내용
1	강원도 정선군 입계면 송계리	179-6	전	4,449	4,311	정선읍 봉양3길 21	정선군	-	-	-
2	강원도 정선군 입계면 송계리	179-20	전	1,952	1,042	정선읍 봉양3길 21	정선군	-	-	-
3	강원도 정선군 입계면 송계리	231-4	답	151	87	정선읍 봉양3길 21	정선군	-	-	-
4	강원도 정선군 입계면 송계리	227	도	582	123	정선읍 봉양3길 21	정선군	-	-	-
5	강원도 정선군 입계면 송계리	179-17	전	3,426	7	인천시 부평구 삼산동	박*범	-	-	-
계		5필지			5,570					

정선군 고시 제2022-150호

정선군 천포리(천포마을)지구 농어촌 취약지역
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

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·위생 등 중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,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『정선군 천포리(천포마을)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』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5일

정 선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정선군 천포리(천포마을)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2. 사업의 목적

- 안전·위생 등 중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,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

3. 사업비 : 2,117,000천원

- 국고 (1,521,000), 지방비(524,000), 자부담(72,000)

4. 주요사업(변경)내용

- 위 치 :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일원
- 노후주택정비
 - 슬레이트 지붕개량 21호, 빈집철거 2호, 집수리 16호
- 안전·위생 및 기초생활 인프라

- 태양광가로등 12개소, 소화전 4개소, 스마트가로등(CCTV) 4개소, 로고젝터 3개소, 방송 장비구축 53개소, 재래식화장실(개인,공용) 철거 12개소, 경로당 화장실 증축 1개소
- 하천변 안전휨스 설치 400m 마을하천다리 확장 3개소, 주차장조성 600㎡, 빨래터 쉼터조성 1개소

○ 주민공동시설(변경)

- 커뮤니티센터 조성 [당초: 신축 107㎡ → 변경: 천포회관 1층 리모델링 444㎡]

(* 사업비 변동 없음)

(* 변경사유: 건축비 상승 및 부지 협소로 신축 지양, 기존 천포회관 리모델링후 커뮤니티 센터 조성)

- 귀농·귀촌의집 조성 34.65㎡,

○ 경광시설정비

- 담장정비 300m, 분리수거장 조성 4개소

○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
- 휴먼케어(마을가꾸기·셀프집수리·주민문화복지 교육, 시설운영·경관협정 컨설팅) 1식
- 주민역량강화(리더교육, 선진지 견학) 1식

○ 분야별 사업 내용

(단위 : 천원)

사업 부문	세부사업(공종)	사업신청(A)		기본계획(B)		기본계획변경(C)		증감(C-B)	
	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
합계			2,180		2,117		2,117		-
노후 주택 정비	소계		556		327		327		-
	■ 슬레이트 지붕철거(환경부 초과)								
	■ 슬레이트 지붕 개량	29호	261	21호	189	21호	189		
	■ 빈집철거	3호	15	2호	10	2호	10		
	■ 집수리	35호	280	16호	128	16호	128		
안전 위생 확보	소계		561		374		374		-
	■ 철길투명방음벽설치	500m	200						
	■ 태양광가로등설치	12개소	96	12개소	96	12개소	96		
	■ 스마트가로등(CCTV)설치	4개소	32	4개소	32	4개소	32		
	■ 로고젝터설치	3개소	5	3개소	5	3개소	5		
	■ 소화전설치	4개소	32	4개소	38	4개소	38		
	■ 하천변 안전펜스설치	400m	56	400m	67	400m	67		
	■ 방송장비구축	53개소	60	53개소	60	53개소	60		
	■ 재래식화장실철거(개인)	10개소	30	10개소	30	10개소	30		
	■ 재래식화장실철거(공동)	2개소	10	2개소	6	2개소	6		
	■ 경로당 화장실 증축	1식	40	1식	40	1식	40		
기초 생활 인프라	소계		186		266		266		-
	■ 마을하천다리확장	1개소	40	3개소	120	3개소	120		
	■ 친환경 주차장조성	600㎡	106	600㎡	106	600㎡	106		
	■ 빨래터 및 쉼터조성	1개소	40	1개소	40	1개소	40		
주민 공동 시설	소계		417		475		475		-
	■ 커뮤니티센터조성	107㎡	274	107㎡	363			-107㎡	-363
	■ 커뮤니티센터조성 (천포회관 1층 리모델링)					444㎡	363	444㎡	363
	■ 귀농·귀촌인의 집 조성	56㎡	143	34.65㎡	112	34.65㎡	112		
경관 시설 정비	소계		129		235		235		-
	■ 담장정비	300m	99	300m	195	300m	195		
	■ 분리수거장조성	3개소	30	4개소	40	4개소	40		

휴먼 케어	소계		40		85		85		-
	■ 마을가꾸기 교육	4회	20	3회	15	3회	15		
	■ 셀프집수리 교육			3회	15	3회	15		
	■ 주민문화복지 교육	50회	10	15회	30	15회	30		
	■ 시설운영컨설팅			1식	13	1식	13		
	■ 경관협정컨설팅	1식	10	1식	13	1식	13		
지역 역량 강화	소계		30		30		30		-
	■ 리더교육	10회	10	9회	14	9회	14		
	■ 선진지견학(당일)	4회	20	3회	17	3회	17		
제경비	소계		261		326		326		-
	■ 기본계획/조사	1식	34	1식	30	1식	30		
	■ 세부설계	1식	56	1식	54	1식	54		
	■ 공사감리	1식	127	1식	126	1식	126		
	■ 사업관리	1식	25	1식	25	1식	25		
	■ 석면함유량조사비	1식	10	1식	17	1식	17		
	■ 노후건축물 구조진단	1식	10	1식	10	1식	10		
	■ 기타(인허가, 폐기물처리)			1식	45	1식	45		
	■ 천포백서제작			1식	20	1식	20		
연계 사업비	소계		97		81		81		-
	■ 슬레이트 철거(환경부)	29호	97	24호	81	24호	81		

5. 사업시행자 : 정선군수 (위탁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)

6. 사업기간 : 2021년 ~ 2024년 (4년)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(☎ 033-560-24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22-1340호

가리왕산 케이블카 CCTV 구매·설치를 위한 행정예고

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물 안전 관리와 화재 및 훼손·도난 등 재난·재해 발생 대비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1월 21일

정 선 군 수

1.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

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-42 일원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 관리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

2. 관련근거

- 가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
- 나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

3. 사업개요

- 가. 사 업 명 : 가리왕산 케이블카 CCTV 구매·설치
- 나. 시 행 자 : 정선군(문화관광과)
- 다. 설치장소 :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-42 일원
 - 가리왕산 케이블카 관리사무소(9대) 및 상부탑승장(10대) 및 중간정류장(2대) 및 하부탑승장(4대) 및 케이블카 타워(4대)
- 라. 설치대수 : CCTV 29대

4. 공고개요

가. 공고기간 : 2022. 11. 21. ~ 2022. 12. 10.(20일간)

나. 공고방법 : 정선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jeongseon.go.kr>)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문화관광과로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22. 11. 21. ~ 2022. 12. 10.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(기한 내 도착분까지 유효), 팩스

다. 제출처 : 정선군 문화관광과

- 우 편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(정선군청 문화관광과)

- 전 화 : 033) 560-2054

- F A X : 033) 560-2593

라. 기재사항 :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, 성명(단체명) 등 인적사항

마. 공청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,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고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합니다.

**「가리왕산 케이블카 CCTV 구매·설치」
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**
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생년월일	
	주 소		전화번호	
행정예고(안)		수정제출(안)		사 유

가리왕산 케이블카 CCTV 구매·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정선군수 귀하

정선군 공고 제2022-1341호

정선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22일

정 선 군 수

1. 제정이유

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제정('22. 1. 4.)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-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정선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경제·사회·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, 기후·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고,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·이행(안 제4조)
- 다. 정선군 추진계획의 수립·이행, 점검에 관한 내용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라. 조례 제·개정 등에 따른 통보 등(안 제7조)
- 마.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·보급에 관한 내용(안 제8조)
- 바. 지속가능성 평가(안 제9조)
- 사.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(안 제10조)
- 아. 정선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에 관한 내용(안 제11조 ~ 안 제18조)
- 자.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, 추진에 관한 내용(안 제19조 ~ 안 제21조)

3. 제정 조례안 : 별첨

4. 입법예고 : 2022. 11. 22. ~ 2022. 12. 12.(20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(월) 18:00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(참조:기획관)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정선군청 기획관실

- 연락처 : 전화(033-560-2125), 팩스(033-560-2592)
- 주 소 : (23161)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, 정선군청 기획관실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직접방문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에 따라 정선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·사회·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속가능성”이란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.
2. “지속가능발전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.
3. “지속가능발전목표”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목표와 정선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제4조에 따른 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말한다.
4. “지속가능발전지표”란 경제, 사회,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①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의 군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군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정선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·이행)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정선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(이하 “기본전략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.

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
2.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
3.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전략
4.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·사회·환경의 기본정책 방향
5. 지속가능발전 주요지표
6.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정선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.

1.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

우

- 2.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
- 3.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
- 4. 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
- 5.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

- ④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.
- ⑤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·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⑥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·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

제5조(정선군 추진계획의 수립·이행) 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.

- 1.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
- 2.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
- 3. 추진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
- 4.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
- 5. 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
- 6.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

③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·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

제6조(추진상황의 점검)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,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조례 제정·개정에 따른 통보 등)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·개정하려

는 조례안을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·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·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·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,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⑥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·변경 내용에 적절히 반영하고,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

제8조(정선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·보급)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지속가능발전지표(이하 “지속가능발전지표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개발·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.

제9조(정선군 지속가능성 평가)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선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·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선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선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정선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)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점검 결과,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정선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(이하 “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공표해야 한다.

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
2.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
3.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
4.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·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.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시민사회단체·학계·산업계·교육계·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지방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
제14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지방위원회를 대표하고,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7조(간사) ① 지방위원회에 지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.

제18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, 세미나의 개최,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.

제19조(수당) 군수는 지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(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)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.

제21조(조사·연구의 의뢰 및 위탁)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일부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, 시민단체, 전문가,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,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2조(협력 등)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, 국내외 지자체, 국제기구, 시민사회단체, 학계,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정선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정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고
	찬 성	반 대		

[관계 법령]

□ 지속가능발전 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·사회·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, 포용적 사회 구현, 생태·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,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·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,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(이하 “지방기본전략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기본전략”은 “지방기본전략”으로, “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”는 “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”로, “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”는 “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”로 본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.

1. 국가기본전략

2.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

3.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정선군 공고 제2022-1344호

제285회 정선군의회(정례회) 부의 안건 공고

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285회 정선군의회(정례회)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01. 2023년도 본예산안
- 02.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2022년 11월 21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공고 제2022-1373호

제285회 정선군의회(정례회) 부의 안건 공고

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285회 정선군의회(정례회)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01. 고한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2022년 11월 29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공고 제2022-1397호

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

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매업 폐업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5일

정 선 군 수

1. 공고명 :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

2. 폐업수리내역

지정번호	상 호	대표자	영업장소재지	폐업일	비고
2021-00014	안경다리상회	이0원	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557-9	2022.12.01.	

3. 공고 및 신청기간 : 2022. 12. 05. ~ 2022. 12. 12.

4. 근거법령 :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

1) 소매인지정 신청접수

- 신청 대상자 :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람
- 신청 지역 :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지역
- 접수 및 문의 : 정선군청 경제과(033-560-2325)
- 구 비 서 류
 -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
 -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축물대장, 건물등기사항증명서) 1부
 -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

2) 접수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

- 접수 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 확인 후 적합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우선 순위자를 소매인으로 지정
- 단, 상기와 같은 지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(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우선 지정하며, 동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

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

- 신청인의 영업장소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함

정선군 공고 제2022-1399호

2025 정선 군관리계획(재정비)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“2025 정선 군관리계획(재정비)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” 와 관련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, 제33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6일

정 선 군 수

1. 사업의 개요

- 사 업 명 : 2025 정선군 군관리계획(재정비) 수립
-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9개 읍면 전체
- 사업규모 : 1,219,720,000㎡
- 사업시행자 : 정선군

2. 공개개요

- 공개기간 : 2022. 12. 6. ~ 12. 21.(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이상)
- 공개방법 : 정선군 홈페이지(www.jeongseon.go.kr)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
- 공개내용 : 2025 정선군 군관리계획(재정비)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 결정내용

3. 의견제출

- 제출기간 : 공개기간과 동일
- 제출방법 : 붙임 서식에 따라 정선군 도시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
- 제 출 처 : 정선군 도시과(정선읍 봉양3길 21)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(☎033-560-21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